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외국교육기관 추가 등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02017호)

2024. 11.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신고의무 대상기관 교육 시 보수교육 추가	2
2.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외국교육기관 추가 등	3
3.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13
※ 참고자료	1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 부
2. 제 안 일 : 2024. 7. 19.
3. 회 부 일 : 2023. 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한정하던 것을 보수교육 과정에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아동·청소년과의 관련성이 높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신고의무 대상기관 교육 시 보수교육 추가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포함하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보수교육에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 과 그 종사자의 <u>자격취득</u> 과정에 아 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 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 켜야 한다.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 ----- ----- ----- <u>자격취득 및 보수교</u> <u>육</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자격취득 과정이 시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할 수 있어 보수교육에서 신고의무 관련 내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고, 아동·청소년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보수교육 과정에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입법례도 다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 보수교육에 신고의무 교육을 포함한 입법례 >

법률명	조문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u>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u> 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u>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u> 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u>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u> 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외국교육기관 추가 등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 외국교육기관, 청소년 단체를 추가하고, 특정되지 않거나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기관은 실정에 맞추어 정리하며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시설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을 정비하고 있음(안 제34조제2항제16호 및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생략)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 -----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 ----- ----- ----- ----- ----- ----- ----- ----- -----

현행	개정안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u>지정하는 체육시설</u>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 ----- ----- <u>정하여 고시</u> <u>하는</u>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u><신설></u> <u>가.·나. (생략)</u>	13. ----- ----- ----- <u>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의 청소년게임제공업</u> <u>나.·다. (현행 가목 및 나목과 같음)</u>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 <u>청소년활동기획업소</u> ”라 한다)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u>가. 「민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u> <u>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단체</u>

현행	개정안
16. (생략) 17. <u>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u> 가. <u>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u> 나. <u>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u> 18. <u>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u>	16. (현행과 같음) 17. 「<u>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3호의 <u>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u> 18. ----- ----- ----- -----<u>채용</u> <u>하는 사업장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u>-. ----- ----- -----.

현행	개정안
19. (생략)	19. (현행과 같음)
20.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 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삭제>
21. ~ 25. (생략)	21. ~ 2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 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u>인가·신고</u> 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 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 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u>지방자치단체의 장</u> ,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0호 및 제18호----- -----인가·허가·등록·신 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 ----- -----중앙행정기관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임.

기관의 업무 특성상 아동·청소년을 대면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해당 기관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은 (1) 취업제한기관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¹⁾의 외국교육기관(안 제56조제1항제2호의4 신설)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²⁾의 청소년단체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안 같은 항 제15호)를 추가하고, (2)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³⁾의 청소년게임제공업 사업장(안 같은 항 제13호가목)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⁴⁾의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사업장(안 같은 항 제17호)을 법률에 명시하며, (3) 기존에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던 학원, 체육시설,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등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안 같

-
-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은 항 제3호, 제11호, 제18호), (4)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를 간결히 정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삭제 [같은 항 제16호⁵⁾(안 제34조제2항제16호에서 간결히 정리), 같은 항 제20호)] 하려는 것임.

먼저, 외국교육기관 추가와 관련하여, 추가대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⁶⁾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⁷⁾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의미함.

두 외국교육기관 모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대학 과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 (이하 생략)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정으로 설립되는 학교를 포함⁸⁾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⁹⁾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를 대상으로 이미 포함하고 있고, 외국교육기관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지도·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설 종사자와 아동 및 청소년의 대면·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각 시설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다음, 청소년단체 추가와 관련하여, 개정안에서 추가하는 기관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① 「민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거나 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단체임.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아동·청소년과 밀접하게 접촉하거나 관련이 높으므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청소년 단체를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봄.

8) 현재 8곳이 운영 중으로, 초·중등교육과정으로 채드워스도국제학교,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가, 고등교육과정으로 한국뉴욕주립대학교(SBU), 한국뉴욕주립대학교(FIT),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가 있음.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국제학교 설립 등)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참고로, 개정안에 따라 취업제한에 추가되는 청소년 단체는 약 1,000여 개¹⁰⁾의 법인 또는 단체로 예상됨.

마지막으로, 기존에 시행령 제24조¹¹⁾에 규정된 청소년게임제공업장이나 노래연습장업을 법률로 상향한 내용,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던 시설에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 변경한 내용,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¹²⁾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경우 제공·알선하는 사업장과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사업장을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법문을 정비한 내용, 「지방자치법」 제161조¹³⁾에 따른 공공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현재 없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은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쉽게 취업제한 기관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취업제한기관이 변동됨에 따라 제57조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조항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체계의 정합성에 비추어 필요한 입법조치임.

10)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를 규정(「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3호)하고 있는데 해당 취업제한기관 점검 대상이 2023년 1,066개로 나타남.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 법 제56조제1항제17호 및 제57조제3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등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을 하는 시설등

1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13)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제58조제2항에 따른 기관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제57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임(안 제67조).

현행	개정안
제67조(과태료)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③ (생략) ④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7조(과태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제58조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현행	개정안
⑤ (생략)	2. 제57조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기관 폐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제58조제2항),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58조제3항) 있음.¹⁴⁾

그런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 폐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현행법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성범죄 경력을 확인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②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고 있는바¹⁵⁾,

취업제한 대상자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폐쇄요구 명령에 불응할 경우 1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음,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성범죄자 채용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점검·확인 대상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개정안은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임.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유사한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법에서는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담·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상담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장

2.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성범죄자 채용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기 위하여는 관련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행확보 수단의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644

[참고자료 1] 현행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유형

기관 유형	대상기관 범위(예시)	근거법령
유치원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학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순복음총회신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동시행령 제54조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 지원시설 또는 위탁교육시설	위센터, 위스쿨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국제학교	제주 국제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교습소	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2조제3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보호법」 제35조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공연시설	공연장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의「문화시설」(별표1)
공연시설	영화상영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의「문화시설」(별표1)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의「문화시설」(별표1)
도서시설	도서관, 문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의「문화시설」(별표1)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의「문화시설」(별표1)

기관 유형	대상기관 범위(예시)	근거법령
문화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의「문화시설」(별표1)
문화보급·전수시설	국악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의「문화시설」(별표1)
문화보급·전수시설	전수회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의「문화시설」(별표1)
과학관	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14,19조
수목원	수목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항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시행령 제17조제8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호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
「아동복지법」 제37조의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드림스타트	「아동복지법」 제37조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주택법」 제2조제3호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기관 유형	대상기관 범위(예시)	근거법령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 등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멀티방 등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경비업법인(경비업무 종사자)	경비업 법인	「경비업법」 제2조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청소년게임제공업	오락실 등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제24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가목
청소년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제24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가정방문 학습교사)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및 제1항제18호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제28조의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장애인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단체 등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1조, 28조
「지방자치법」 144조 공공시설중 아동청소년이용시설		
「지방교육자치법」 32조 교육기관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	시어린이회관,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교육원 등	「지방교육자치법」 32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